

부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9년 5월 4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9년 5월 4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52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(2009년 5월 18일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자치행정과장 박한권)

가. 제안이유

- 「지방재정법」이 전부개정(법률 제7663호, 2005. 8. 4. 공포 · 2006. 1. 1. 시행)되고,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이 개정(대통령령 제 19226호, 2005. 12. 30. 공포 · 2006. 1. 1. 시행)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,
-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을 줄이고,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「지방재정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.(안 제1조)
-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 중 당연직 위원을 사회단체보조금

지원업무담당국장, 예산업무담당국장으로 규정함.(안 제10조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·○ 민간경상보조와 사회단체보조금 그리고 기금 사업의 성격이 불명확한데 개선을 위해 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?	○ 사회단체보조금 풀예산을 축소해 가고 있으며, 민간경상보조 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의회심사를 받는 방향으로 점진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. (이상 자치행정과장)

4. 토론요지

가. 반대토론 : 없음

나. 찬성토론 : 없음

5. 심사결과 : 『원안의결』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부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409호
의결 년월일	2009. 5. 21. (제152회)

제출년월일 : 2009. 5. 4.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이유

- 「지방재정법」이 전부개정(법률 제7663호, 2005. 8. 4. 공포·2006. 1. 1. 시행)되고,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이 개정(대통령령 제19226호, 2005. 12. 30. 공포·2006. 1. 1. 시행)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,
-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을 줄이고,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가. 「지방재정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.(안 제1조)
- 나.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 중 당연직 위원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업무담당국장, 예산업무담당국장으로 규정함.(안 제10조)

부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재정법」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이 조례에 있어서 “사회단체”라 함은”을 “이 조례에서 “사회단체”란”으로 한다.

제3조 중 “사회단체보조금”을 “사회단체보조금(이하 “보조금”이라 한다)”으로 하고, “바에 의한다”를 “바에 따른다”로 한다.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(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) ① 시장은 매년 보조금의 지원대상, 지원규모, 지원절차 등을 포함한 보조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보조금지원계획을 시보나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.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(신청 및 접수)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회단체의 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보조금지원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조금지원신청서와 보조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조금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

없으면 접수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사회단체의 장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8조 중 “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”를 “제7조제2항에 따라”로 하고, “보조금지원”을 “보조금 지원”으로 하며, “부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”를 “부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”로 한다.

제9조 중 “제8조의 규정에 따라”를 “제8조에 따라”로 하고, “보조금지원금액을 당해”를 “보조금 지원액을 해당”으로 한다.

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0조(위원회 구성) ①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보조금지원업무담당국장이 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.

1. 당연직 위원: 보조금지원업무담당국장, 예산업무담당국장

2. 위촉직 위원: 시의회의원, 대학교수 및 보조금지원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
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보조금지원업무담당과장이 된다.

제11조 중 “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재위촉된 위원의 임기

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”를 “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 위원
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” 로 한다.

제12조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조 “제1호”를 “제2호”로 하
고, “제2호”를 “제1호”로 하며, 제3호 중 “사회단체보조금”을 “보조금”
으로 하고, 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며, “위원회에 부의하는
사항”을 “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3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하고, “관여”를 “참여”로 한다.

제14조제2항 중 “운영에 관하여 필요한”을 “운영에 필요한”으로 한다.

제16조 중 “작성 비치”를 “작성·비치”로 한다.

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7조(실비보상)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「부천시 위원회 실비
변상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8조 중 “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”을 “규정한
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”으로 한다.

제19조제1항 중 “사업완료 또는 종료시 사업추진실적, 사업비 정산,
자체평가 내용 및 기타”를 “사업이 완료 되었거나 종료되었을 때에는
사업추진 실적, 사업비 정산, 자체평가 내용 및 그 밖에”로 하고, 같은
조 제2항 중 “사회단체보조금”을 각각 “보조금”으로 한다.

제20조 중 “계리”를 “회계처리”로 한다.

제21조 중 “사항외에”를 “사항 외에”로 하고, “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
한”을 “관리 등에 필요한”으로 하며, “「부천시 재무회계 규칙」의 관

계규정을 준용한다”를 “「부천시 재무회계 규칙」을 준용한다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재정법」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 있어서 “사회단체”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사회단체”란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3조(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) 사회단체보조금의 운영·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</p>	<p>제3조(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) 사회단체보조금(이하 “보조금”이라 한다)의----- ----- -----<u>바에 따른다.</u></p>
<p>제6조(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)</p> <p>① 시장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대상, 지원규모,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사회단체 보조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</p>	<p>제6조(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)</p> <p>① 시장은 매년 보조금의 지원대상, 지원규모, 지원절차 등을 포함한 보조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</p>

현행	개정안
<p>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계획을 일정기간동안 시보,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</p>	<p>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보조금지원계획을 시보나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.</p>
<p>제7조(신청 및 접수)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회단체의 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사회단체보조금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신청서와 보조사업 계획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>제7조(신청 및 접수)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회단체의 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보조금지원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조금지원신청서와 보조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
<p>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보조금지원을 신청한 사회단체의 장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.</p>	<p>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조금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사회단체의 장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.</p>
<p>제8조 (심의) 시장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보조금지원의 필요성·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, 부천시사회단체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.</p>	<p>제8조(심의) -----제7조제2항에 따라----- ----- ----- 보조금 지원의 ----- -----, 부천시사회단체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.</p>

현행	개정안
<p>제9조(결과통보) 시장은 <u>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</u> <u>확정한 보조금지원금액을</u> <u>당해</u> <u>사회단체의 장에게</u> <u>통보</u>하여야 한다.</p>	<p>제9조(결과통보) ----- <u>제8조에 따라</u> ----- -----<u>보조금 지원액을</u> <u>해당</u>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10조(위원회 구성) ① <u>제8조의 규정에 의한</u> <u>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</u> <u>관한</u> <u>사항을</u> <u>심의</u>하기 위하여 <u>위원회</u>를 구성한다.</p> <p>② <u>위원회는</u> <u>위원장</u>과 <u>부위원장</u>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한다.</p> <p>③ <u>위원회의</u> <u>위원장</u>은 <u>부시장</u>이 되고, <u>부위원장</u>은 <u>사회단체보조금지원업무담당국장</u>이 되며, <u>위원</u>은 <u>다음</u> <u>각</u> <u>호의</u> <u>어느</u> <u>하나와</u> <u>같이</u> 한다.</p> <p>1. <u>당연직</u> <u>위원</u> : <u>사회단체보조금지원업무국장</u>, <u>문화업무담당국장</u>, <u>복지업무담당국장</u></p> <p>2. <u>위촉직</u> <u>위원</u> : <u>시의회의원</u>, <u>대학교수</u> 및 <u>사회단체보조금지원업무에</u> <u>관한</u> <u>학식</u>과 <u>경험</u>이 <u>풍부</u>한 <u>자</u>중에서 <u>시장</u>이 <u>위촉</u>한다.</p> <p>④ <u>위원회의</u> <u>사무처리</u>를 위하여 <u>간사</u> 1인을 두되, <u>간사</u>는 <u>사회단체보조금지원업무담당과장</u>이 된다.</p>	<p>제10조(위원회 구성) ① <u>보조금 지원에</u> <u>관한</u> <u>사항</u>을 <u>심의</u>하기 위하여 <u>위원회</u>를 둔다.</p> <p>② <u>위원회는</u> <u>위원장</u>과 <u>부위원장</u>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<u>위원</u>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③ <u>위원장은</u> <u>부시장</u>이 되고, <u>부위원장은</u> <u>보조금지원업무담당국장</u>이 되며, <u>위원</u>은 <u>다음</u> <u>각</u> <u>호의</u> <u>어느</u> <u>하나에</u> <u>해당</u>하는 <u>자</u> <u>중에서</u> <u>시장</u>이 <u>임명</u> 또는 <u>위촉</u>하는 <u>자</u>로 한다.</p> <p>1. <u>당연직</u> <u>위원</u>: <u>보조금지원업무담당국장</u>, <u>예산업무담당국장</u></p> <p>2. <u>위촉직</u> <u>위원</u>: <u>시의회의원</u>, <u>대학교수</u> 및 <u>보조금지원업무에</u> <u>관한</u> <u>학식</u>과 <u>경험</u>이 <u>풍부</u>한 <u>자</u></p> <p>④ <u>위원회의</u> <u>사무처리</u>를 위하여 <u>간사</u> 1명을 두되, <u>간사</u>는 <u>보조금지원업무담당과장</u>이 된다.</p>

현행	개정안
<p>제11조(위원의 임기) 위촉직 위원 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<u>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재위촉 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.</u></p>	<p>제11조(위원의 임기) ----- ----- <u>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</u></p>
<p>제12조(위원회 기능) 위원회는 다음 <u>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생략) 2. (생략) 3. <u>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</u> 4. <u>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</u> 	<p>제12조(위원회 기능) ----- <u>각 호의 -----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 제2호와 같음) 2. (현행 제1호와 같음) 3. <u>보조금 ----- -----</u> 4. <u>그 밖에 ----- ----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</u>
<p>제13조(회의 운영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·② (생략) ③ <u>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<u>당해 안건의 심의·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.</u></u> 	<p>제13조(회의 운영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<u>해당----- ----- <u>참여-----.</u></u>
<p>제14조(분과위원회) ① (생략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② <u>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<u>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</u></u> 	<p>제14조(분과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② ----- <u>운영에 필요한 ----- -----.</u>

현행	개정안
<p>제16조(회의록)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.</p>	<p>제16조(회의록) ----- ----- 작성 · 비치-----.</p>
<p>제17조(실비보상)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「부천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의 규정에 의하여 일비 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제17조(실비보상)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「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
<p>제18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</p>	<p>제18조(운영세칙) ----- 규정 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----- -----.</p>
<p>제19조(보고 등) ① 보조금을 교부 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<u>사업완료 또는 종료시 사업추진실적, 사업비 정산, 자체평가 내용 및 기타</u>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시장은 매년 <u>사회단체보조금</u> 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<u>사회단체 보조금</u>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.</p>	<p>제19조(보고 등) ① ----- ----- <u>사업이 완료</u> <u>되었거나 종료되었을 때에는 사업</u> <u>추진 실적, 사업비 정산, 자체평가</u> <u>내용 및 그 밖에</u>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<u>보조금</u> -----, -----, ----- <u>보조금</u> -----.</p>

현행	개정안
<p>제20조(별도계정) 보조금을 교부 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그 교부 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,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<u>계리</u>하여야 한다.</p>	<p>제20조(별도계정) ----- ----- ----- ----- <u>회계처리</u>----- -----.</p>
<p>제21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된 <u>사항</u>외에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 및 <u>관리</u>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」 및 「부천시 재무회계 규칙」의 <u>관계규정</u>을 준용한다.</p>	<p>제21조(준용) ----- <u>사</u> <u>항</u> 외에 ----- --- <u>관리</u> 등에 필요한 ----- ----- --- 「부천시 재무회계 규칙」을 <u>준용</u>한다.</p>